

참고

‘14년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 요약

□ 시행기간 : ‘14.12.22.(월) ~ ‘15.2.28.(토) (10주간)

○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, 난방온도 제한(공공은 의무, 민간은 권고), 심야시간 옥외광고물 소등(공공) 등을 실시

* 단, ‘문열고 난방 영업 금지’ 과태료 부과는 ‘14.12.29.(월)부터 적용

구 분	제한대상	제외대상	제한내용
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<small>*14.12.29.부터 과태료</small>	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, 상가, 건물 등	난방기미설치업장, 지하도상가 등	·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
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	공공기관 (2만여개소)	학교, 도서관, 민원실, 의료기관, 전시실, 대중교통시설 등	· 난방기 가동시, 실내온도 18℃이하 유지(단, 가스난방,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20℃이하 유지) ·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(장애인, 임산부 등 제외)
공공기관 조명 사용 제한	공공기관 (2만여개소)	의료기관, 대중교통시설 등	·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(23:00~익일 일출시)에 소등
권장사항	계약전력 1백kw 이상 (약 6.8만여개소)	공동주택, 공장, 군사시설, 사회복지시설, 의료기관, 유치원 등	· 피크시간대(10~12시, 15~17시) 실내온도 20℃이하 유지
	점포, 상가, 건물 등	-	· 영업(업무) 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 소등